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<p>마이홈 포털 www.myhome.go.kr</p> <p>마이홈 콜센터 1600-1004</p> <p>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</p> <p>올해 12월 1일부터 찾아갑니다.</p>	보도자료			
	<p>배포일시</p>	<p>2016. 3. 4(금) 총 7매(본문 3, 붙임 4)</p>		
	<p>담당부서</p>	<p>•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고영진, 사무관 권순길, 주무관 김일 • ☎ (044)201-3479, 3484</p>		
<p>2016년 3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6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		

‘땅 경계선 명확하게 좌표로’ ...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대

- 올해 실험사업 착수, 무인항공기 드론(Drone) 활용 시도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「도해(圖解)지적 수치(數值)화 추진계획」을 수립하고,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.

- (도해지적)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
- (수치지적)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

-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였기에,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.

《 도해지적의 문제점 》

- ①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곤란
 - * 지적도(1/1200)상 경계선 굵기 0.1mm는 지상에서 12cm에 해당(경계점 오차범위 ±36cm)
- ② 측량자별 개인오차·재량에 따라 경계변동 여지가 많음
- ③ 6.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·소실(전국 401만 필지)에 따른 재작성 및 지적기준점의 망실(약 85%)·응급복구로 인한 측량 기초자료의 부정확

- 이러한 지적도는 신축·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*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.

*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으로 국토의 약 14.8%를 차지

-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그 진행속도가 더딘 상황*이다.

* (수치지적 전환율) 전 국토 3,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로 약 6.1%에 한함

- 아울러,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국토의 일부(14.8%)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해지적을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‘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’을 마련하였다.

- 올해 실험사업에 이어 ‘17년에 시범사업 및 법·제도를 정비한 후, ‘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(119만 필지)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(토지분할, 경계복원측량 등)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

- 토지경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 중 수치지적 전환이 용이한 지적기준점 사용지역*(국토의 약 30%, 1,140만 필지로 추정)을 우선적으로 추진(‘18~‘30년)하기로 하였다.

* 지적기준점의 좌표(X·Y)로부터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결정

- 아울러, 국토부는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, 최신측량기술인 드론*(Drone)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.

*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"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 아니라,
-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권순길 사무관(☎ 044-201-3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

□ **추진 배경**

- 도해지적의 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도입('75), 지적재조사사업('12~'30) 등을 통해 수치지적*으로 전환중이나, 속도가 느린 실정
 - * (수치지적) 전체 3,803만 필지 중 233만 필지(6.1%) 완료('15년말 기준)
-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계분쟁* 해소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하여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가속화 필요
 - * (국회에정처, '15.9월) 최근 측량민원은 '14년 711건으로 '05년 144건 대비 393.7% 증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획일적인 측량성과 제공 필요성 강조

□ **정책 방향**

- (기본방향) 지적도면상의 선형(線形) 경계를 수치(좌표)에 의한 경계로 전환(경계점좌표등록부)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
 - 지적확정측량, 지적재조사사업 외에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가로 마련('17년)
- ☞ 수치지적 전환 가능 지역(국토의 약 30%, 1,140만 필지로 추정)을 조사하여 추진('18~'3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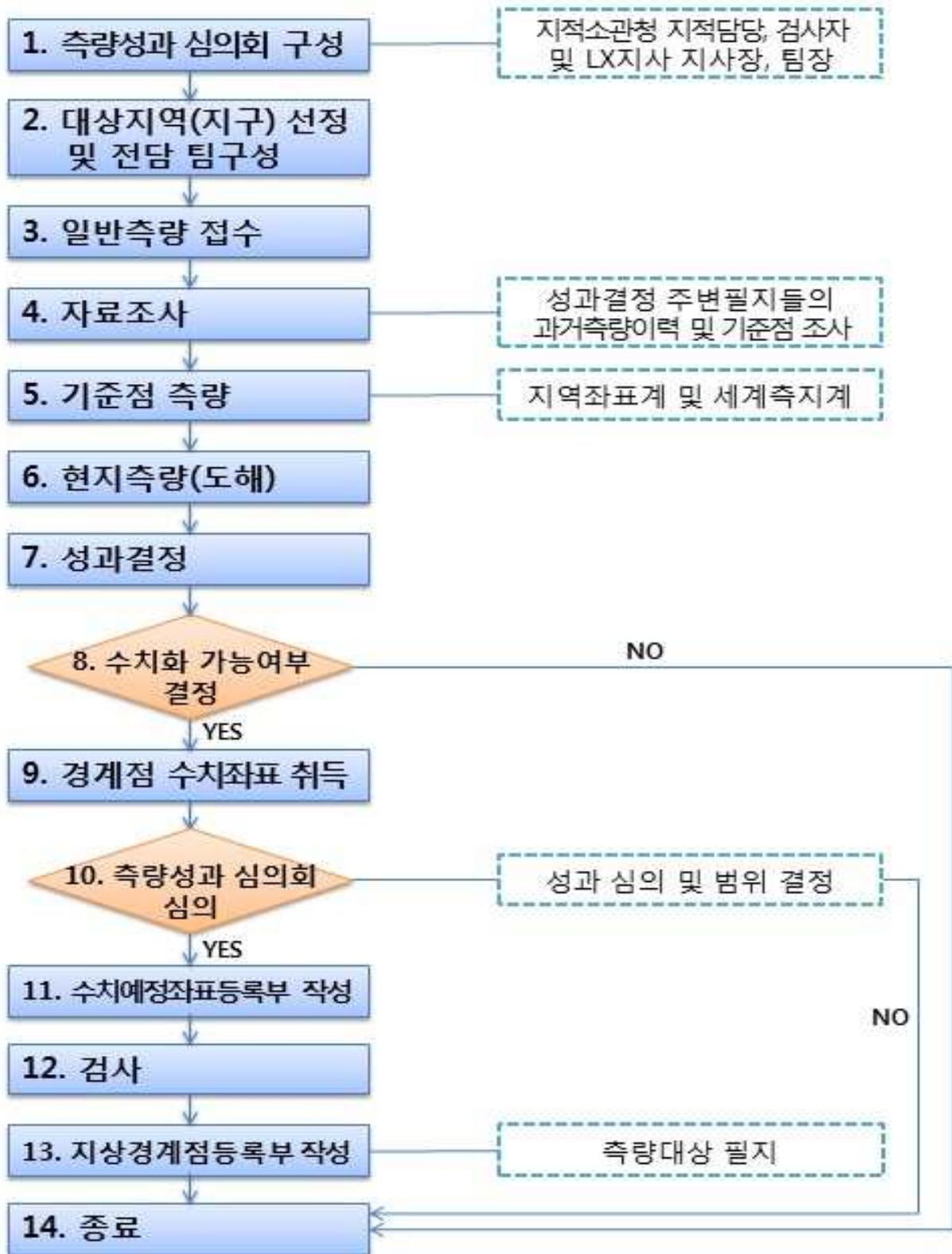
- (추진전략)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연도별·단계별 추진

구 분	주 요 내 용
1단계('16년)	▪ 수치지적 전환 작업기준 마련 및 실험사업 추진
2단계('17년)	▪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 ▪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3단계('18년)	▪ 수치지적 전환 제도 전국 확산

- ('16년 계획)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단 구성, 지적기준망 정비, 실험사업* 추진,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을 중점 추진
 - * 비예산으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측량방법에 관하여 중점 검토 하되, 경지정리지역 등을 첨단측량기술로 일괄 수치화하는 방안 병행 검토

참고 2

도해지적 수치화 추진절차



참고 3

도해지적과 수치지적 비교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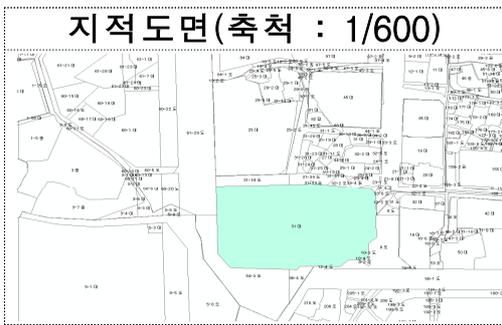
○ (도해지적) 토지조사사업('10~'18) 및 임야조사사업('16~'24)을 통해 토지·임야대장과 지적·임야도를 작성하고, 도해지적*제도 시행

* 종이 지적도에 지적경계선을 등록하고, 이를 기준으로 현장에 경계를 복원

○ (수치지적) 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지적*제도를 도입('75)

* 토지경계를 좌표(X·Y)로 등록하고 정밀한 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역

□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비교

구 분	도해(圖解)지적	수치(數值)지적
공부비율	3,570만 필지(93.9%)	233만 필지(6.1%)
측량기준	지적·임야도	경계점좌표등록부
도면축척	1/1200, 1/2400, 1/3000, 1/6000	없음
오차한계	36cm ~ 180cm(도면축척별 상이)	10cm
측량수행	한국국토정보공사 전담	민간에 개방(2004년 ~)
시장규모	3,654억원(79%)	969억원(21%)
수치지적 전환예시		

참고 4

지적재조사 사업과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비교

□ 사업의 성격

- (재조사사업과의 공통점) 지적측량을 수반하며,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수치좌표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
- (재조사사업과의 차별성)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와 다른 지적불부합지(전 국토의 14.8%)를 대상으로 하나,
 - 수치지적 전환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도해지역 토지(전 국토의 79.1%)를 대상으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추진
 - 지적재조사는 현실경계 위주로 도상경계를 새로이 설정하나, 수치지적 전환은 도상경계 변동없이 수치좌표만 지적공부에 등록

□ 사업별 특성 비교

구 분	지적재조사	수치지적 전환
사업대상	지적불부합지	불부합지 외 도해지역
사업비	예산사업(총 1조3천억)	비에산 사업
성과결정	지적측량 수반	지적측량 수반
지적공부	수치좌표	수치좌표
경계조정	가능	불가능
면적등록	새로이 면적 산출	기존 토지대장 면적 유지
면적정산	조정금	없음